

제 5 장 이사·이사회

제 31 조(이사의 수)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제 32 조(이사의 선임)

-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이사의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3 조(이사의 임기)

-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, 다른 결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.
- ②제 1 항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.

제 34 조(이사의 보선)

- ①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 31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사외이사가 사임·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1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.

제 35 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

- ①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.
- ②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출할 수 있다.

제 36 조(이사의 직무)

-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6 조의 2(이사의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)

이사는 업무수행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,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36 조의 3(이사의 경업금지)

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당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. 그러나 경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37 조의 2(이사,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

- 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)의 6 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-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(경업금지),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 398 조(자기거래 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8 조(이사의 보고의무)

-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9 조(이사회 구성과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각 이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제 2 항을 준용한다.
- ④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이사가 담당하며,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한 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0 조(이사회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 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41 조(이사회의 의사록)

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42조(위원회)

①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경영위원회
2. 감사위원회
3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②각 위원회의 권한,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9 조, 제 40 조 및 제 4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3 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

①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
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 44 조(상담역 및 고문)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